

평창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안

검토보고서

1. 회부경위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3. 9 평창군수(자치행정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1999. 4. 26.
- 다. 상정일자 : 1999. 4. 26. 제65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2차 본회의

2. 제안이유

- 공무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평창군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입법화하기 위함.

3. 주요 내용

- 가.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목적(제1조)
- 나. 설립기관의 범위(제2조)
- 다.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(제3조).
- 라. 협의회의 설립(제4조)
- 마. 협의회 규정(제5조)
- 바.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(제6조)
- 사. 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(제7조)
- 아.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회원(제8조)
- 자.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
- 차.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(제10조)
- 카. 합의사항의 이행(제11조)
- 타. 협의회의 의무(제12조)

파.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(제13조)

하. 협의회에 대한 지원(제15조)

4. 검토의견

■ 먼저 관련법을 검토하여 보면

-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, 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등을 위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안이 '98.2.24법률 제5516호로 제정되었으며, 동법 제7조(협의회의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세부사항)규정에 의거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현법재판소 규칙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,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음.
- 가입범위는 6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연구, 특수기술직례의 일반직공무원, 특정직 공무원중 6급이하의 외무공무원, 기능직공무원, 고용직공무원, 별정직 공무원이 가입 토록되어있으나, 가입대상 공무원중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단서규정에 의하여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, 저희·감독의 직책이나 인사, 예산·경리·물품출납·비밀·안보·경비 또는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동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음.
- 협의회의 기능은 기관고유의 근무환경에 개선에 관한사항,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사항, 소속공무원의 고충에 관한사항, 기타 기관발전에 관한사항등을 협의하고,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협의위원을 선임하게 되어 있으며, 협의회 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문서로 명시하여 협의를 요구할 경우 이를 성실히 임하도록 되어 있음.

- 가입대상 공무원의 가입 및 탈퇴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,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.
- 기타 상위법상 저촉사항 없으며, 자구등에도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